

光州直轄市西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(案)

審 查 報 告 書

1993年 5月

總 務 委 員 會

1. 審査經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3 年 4 月 23 日
- 나. 提出者 : 光州直轄市 西區廳長
- 다. 回附日字 : 1993 年 4 月 26 日
- 라. 最初上程日字 : 1993 年 5 月 21 日
- 마. 開催回數 및 日數 : 1 回 (93. 5. 21.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西區 總務局 總務課長)

가. 提案理由

-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모사전송기(FAX)를 이용하여 증명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『민원온라인제』를 시행하기 위함.

나. 主要骨子

- 구청에서 취급하는 제증명 일부를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함.

○ 『민원온라인제』 시행에 따른 구청장의 공인을 동사무소에 비치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※ 법적근거 — 광주직할시 서구 공인조례 제2조 (공인의 비치사용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專門委員 : 丁浩文)

○ 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호적등본, 토지대장등본, 지적도등본, 신원증명, 납세완납증명, 세목별납세증명, 지방세납세증명등 대장 확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제증명을 모사전송기를 이용 동사무소에서 발급하여 주민 편의증진에 기여한다는 개정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質疑 및 答辯要旨

質 疑	答 辯
<p>○ 구민의 생활편익에 좋은 제도이므로 유효적절하게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</p>	<p>(答辯者 : 總務課長 李占守)</p> <p>○ 민원인이 구청에 오지않고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제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</p>

5. 審査結果 :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슴

6. 其他事項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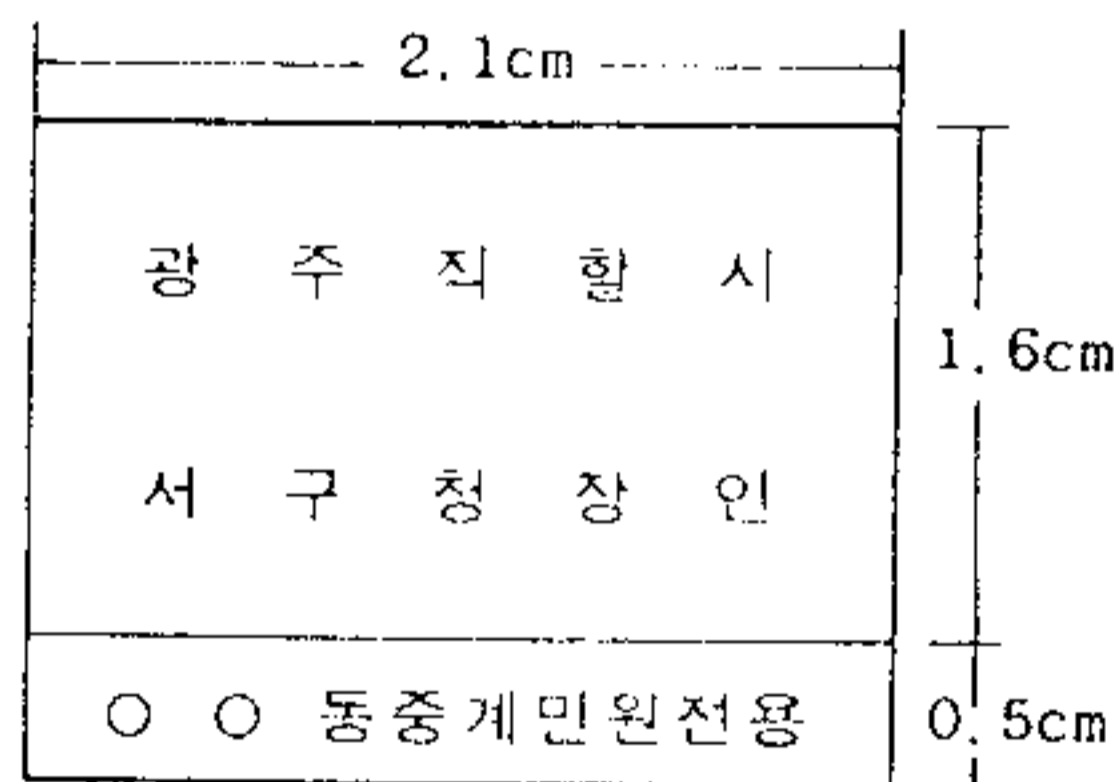
광주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광주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항중 "제1항 내지 제3항"을 "제1항 내지 제4항"으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며,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기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활용할 수 있으며, 그 공인을 사용할때는 "별표4"와 같이 중계민원전용임을 표시해야 한다.

"별표4"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

부 칙

이 조례는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광주직할시 서구 공인조례)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
<p>제2조 (공인의 비치 사용)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생략</p> <p>③ 생략</p> <p>④ 생략</p> <p>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(생략)</p>	<p>제2조 (공인의 비치 사용)</p> <p>① 현행과 같음</p> <p>② 현행과 같음</p> <p>③ 현행과 같음</p> <p>④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기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 사무 일부를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, 그 공인을 사용할때 "별표4"와 같이 중계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(신설)</p> <p>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공인은 ----- ----- -----</p>